

수원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합191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블 담당변호사 여명준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이선미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D의 피고 B에 대한 2020. 4. 9.자 43,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표 순번 1 내지 3의 같은 행 각 ‘증여일자’란 기재 해당 일시에 같은 행 각 ‘증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1), 피고 C 사이에 별지 표 순번 4의 같은 행 ‘증여일자’란 기재 해당 일시에 같은 행 ‘증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의 금원지급행위를,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243,035,400원, 피고 C은 293,206,5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E이 근무하였던 회사이고, 채무자 D은 E의 부친이며, 피고 C은 E의 처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E에 대한 형사사건

E은 ‘원고의 직원으로 구매팀에 근무하면서 네덜란드 회사인 F 및 그 자회사로부터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스캐너 장비와 스캐너 옵션 장비를 구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F 한국 자회사와 유사한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위 회사를 원고가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발주처로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총 50억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합36, 81(병합), 98(병합)], E과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노3344호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8. 2. 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E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와 D 사이의 민사사건

원고는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6952호로 D, G(D의 처), C(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E와 D, G, C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D, G, 피고 C은 각 증여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1. 7. D, G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D은 575,000,000원, G은 5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H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H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대위 청구를 추가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D와 G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197), 위 판결은 2021. 4. 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

1) 피고 C에 대한 금전 지급

피고 C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197호 사건에 따라 원고에게 판결금과 이자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년 금593호로 변제공탁하였다. 그런데 위 공탁금은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여주지원공탁소 계좌로 이체되었다(갑6, 11).

2) 피고 B에 대한 금전 지급

가) 피고 B은 2019. 6. 22. K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L아파트 M호를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19. 6. 17. 50,035,400원이, 2019. 6. 27. 150,000,000원이 각 인출되어 K에게 지급되었다(갑6).

나) 한편, D은 2020. 4. 9. 현금 43,000,000원을 B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하였다(갑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3, 6, 7, 10, 11, 1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D이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사용자인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지급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2), 원고는 D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따른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판결금 채권을 갖고 있고, D은 피고 B에 대하여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으며, D이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은 D을 대위한 원고에게 250,000,000원의 대여금 중 243,035,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D의 피고 B에 대한 2020. 4. 9.자 금원지급행위 부분

1) 피보전채권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에 대하여 2017. 12. 20.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6952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7. D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D은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0. 4. 9. 피고 B의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4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D은 원고의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피고 B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지급행위 당시 적어도 원고의 D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판결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든 증거들, 갑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43,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지급행위는 그 목적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불문하고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D은 위 금원지급행위 당시 원고로부터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금원지급행위 부분

1)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존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과

는 약 10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중, I, I의 아들 O, D은 I가 조합장이었던 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조합 일을 하며 알게 되었고, O과 D은 D이 위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O의 증언), ② 2019. 1. 6.경 이 사건 계좌에는 87,603,383원의 예금채권이 남아있었다가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들에게 금원이 지급된 후인 2019. 5. 31.경에는 42,117,264원이 남아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2019. 6. 17. 50,035,400원, 2019. 6. 27. 150,000,000원이 각 인출되어 피고 B의 아파트매매계약 상대방인 K에게 지급되었고 2019. 5. 31. 293,206,592원이 피고 C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공탁금으로 지급되는 등 이 사건 계좌의 대부분 거래는 D의 지인들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2024. 6. 1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③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I는 아들인 O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O은 '2019. 5. 31.경 피고 C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공탁금으로 이체된 돈은 그 무렵 D의 부탁을 받고 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O은 그 당시 D으로부터 2018년경 차용한 2억 5,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위 2억 5,1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이와 별도로 D이 지정하는 자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O은 위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 수 십회에 걸쳐 ATM기로 1회에 500만 원 정도씩 입금하였다는 것인데(증인 O의 증언), 이러한 계좌의 사용은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그 무렵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D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할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지명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의 당사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의 당사자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의 당사자는 명의인인 I라고 보아야 한다3).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예금을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부동산에 관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참조). 따라서 D이 이 사건 계좌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D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D의 피고 B에 대한 2020. 4. 9.자 43,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갑4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는데, D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카명1364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위 채권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1대와 농기계만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원고가 D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D이 피고 B에 대하여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는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2024. 4. 12.자 준비서면 3쪽 참조).

다. 소결론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243,035,400원 중 주위적 청구에서 인정된 43,000,000원의 원상회복 부분을 제외한 대여금 200,0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현호, 판사 김리사, 판사 김선호

별지

순번	수증자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소 계(원)
1		19. 6. 17.	50,035,400	243,035,400
2		19. 6. 27.	150,000,000	
3		20. 4. 9.	43,000,000	
4		19. 5. 31.	293,206,592	293,206,592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원고는 소장에서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2024. 8. 30.자 준비서면 8쪽, 9쪽에서 위 각 금원지급행위가 대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므로, 소장 청구취지 1항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부분을 “해당 금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이라고 선행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순되지 않으므로, 순서를 정한 선택적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3)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지만(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명의인인 I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예금채권의 양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구하지 않고,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지급행위의 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을 구하고 있다.